

「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1월 22일, 이은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비대면·무인 시스템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바, 기존의 성인문해교육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성인문해교육 정의에 ‘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’ 포함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4조)
- 추진 사업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을 추가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2.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